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조회, 이체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간의 권리 및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절차 등 기본적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서비스"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조회, 이체, 결제 서비스 등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총칭한다.
-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의하여 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3. "지급인"이란 "출금계좌"의 명의인을 말한다.
- 4. "수취인"이란 "입금계좌"의 명의인을 말한다.
- 5. "출금계좌"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연결하는 계좌로서 자금 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 6. "입금계좌"란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말한다.
- 7.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입금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 8. "추심이체"라 함은 은행이 출금에 대한 동의를 한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은행의 계정 또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 9. "운영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운영·제공하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말한다.
- 10. "제공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통하여 출금·입금, 각종 조회 등의 업무처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다
- 11.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은행이 다른 "제공기관"과 별도 제휴 없이 "운영기관"을 통하여 API 형태로 운영·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출금이체업무"란 은행의 출금에 동의한 "이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은행의 수납계정 또는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업무를 말한다.
- 나. "입금이체업무"란 은행의 지급계정 또는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취인"의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업무를 말한다.
- 다. "잔액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계좌 잔액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한다.
- 라. "거래내역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계좌 거래내역



- 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업무를 말한다.
- 마. "계좌실명조회업무"란 은행이 "수취인" 또는 출금이체 신청을 한 "이용자"계좌의 정상 여부 및 실명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업무를 말한다.
- 바. "카드목록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 목록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한다.
- 사. "카드기본정보 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별로 기본정보 및 연계된 결제계좌번호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한다.
- 아. "카드청구기본정보 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별로 청구금액 및 결제일 등 월별 청구 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한다.
- 자. "카드청구상세정보 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별로 청구금액에 대한 카드이용내역 등 월별 청구 상세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한다.
- 차. "선불계정정보 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자가 관리하는 본인의 선불계정 목록 및 연계계좌번호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한다.
- 카. "선불계정잔액 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자가 관리하는 본인의 선불계정에 대한 잔액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한다.
- 타. "선불계정거래내역 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선불전자 지급수단발행업자가 관리하는 본인의 선불계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한다.
- 12. "모바일기기"란 LTE, 5G 등 이동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기기를 통칭한다.
- 13.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모바일기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은행 애플리케이션"은 은행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서비스" 가입 시 본 약관이 적용된다.
- 나. "제휴업체 애플리케이션"은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제휴업체 애플리케이션"내에 은행의 "서비스" 등록 시 본 약관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 14. "수수료"란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제휴업체"란 은행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업체 애플리케이션"에 은행의 "서비스"를 연동한 사업자를 말한다.
-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은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용 애플리케이션 화면 내 또는 은행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으로 제공한다.



② 은행은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4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① 은행은 개별 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의 규정을 위해 개별약관을 사용하거나 이용정책을 구분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한 개별 약관 및 이용정책이 우선한다.
-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을 적용한다.

제5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 ①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를 제공하여 야 한다.
- ② 이용자는 은행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는 은행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에 연결된 출금계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2장 이용계약】

<제1절 이용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제6조 (이용계약의 체결)

-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함)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함)가 은행이 정한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은행이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 ② 이용계약의 대상은 만 14세 이상의 고객으로 한정한다.
- ③ 가입신청자가 동의 의사를 은행에 전달하게 되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은행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④ 은행은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이용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은행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정지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재이용신청 하는 경우
- 2.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은행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4. 이용자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 5. 이미 가입된 회원이 중복하여 가입신청 하는 경우
- 6. 다른 이용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7.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에 확인된 경우
- ③ 은행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며, 이용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절 이용자>

제8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 ① 은행이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전자 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 ② 은행은 이용자 전체에 대하여 공지사항, 서비스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전용 애플리케이션 또는 은행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안내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한다.

제9조 (이용자 정보의 제공 및 변경)

- ① 은행은 이용계약 체결 이후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 ② 이용자는 은행에 제공한 회원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은행에 알려야 한다.

【제3장 서비스】

제10조 (서비스의 종류)

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계좌조회 : 계좌 거래내역 및 잔액 조회
- 2. 송금 : 당·타행 이체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 3. 환전 : 환전 신청 후 은행의 인근 지점에서 외화현금 수령
- 4. 상품가입 : 정기예금·정기적금·펀드 등 은행의 금융상품 신규가입
- 5. 잔액 모으기 : 1개 이상의 출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입금계좌로 입금
- 6. 자산관리 :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서비스
- 7. 카드정보조회: 카드목록, 카드기본정보, 카드청구기본정보 및 상세정보
- 8. 선불계정조회: 선불계정목록, 선불계정 잔액 및 거래내역 정보
- 9. 기타 은행이 정한 서비스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 ① 제6조에 따라 이용계약이 체결되면 은행은 이용자에게 본 약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은행은 본 약관이 정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약관 동의,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 절차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추가적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없다.

제12조 (이체대상 및 출금한도)

- ① 출금이체업무 및 입금이체업무의 이체 대상은 현금으로 한다.
- ② 출금이체업무의 일일 이용한도는 운영기관에서 정하는 한도로 한다.
- ③ 출금계좌의 인출가능 예금 잔액이 출금하려는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출금이 제한될 수 있다.

제13조 (인증)

이용자는 본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이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서비스의 중단)

- ① 서비스의 이용은 은행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00시 10분부터 23시50분까지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 1. 운영기관의 시스템 점검시간
- 2.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
- 3.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 시스템 관리 업무
-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 이용자가 과거에 본 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당한 경우
- 6. 회사가 정한 서비스 제공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7. 기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DDOS,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 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은행은 사전에 서비스 중단을 공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이를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 ③ 서비스는 관련 법령,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은행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제휴업체 등의 시스템 운영 상황이나 계약 체결 상황에 따라 서비스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수 있다.



【제4장 수수료】

제15조 (수수료)

- ① 은행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은행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전용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수수료 변경 사유 등이 발생 시 은행은 제3조의 변경절차를 \overline{C} 용한 다.
- ④ 이용자는 제 3항의 수수료 변경 통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수료 변경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 약정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한다.

【제5장 준수사항】

제16조 (고객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약관, 세부이용지침, 서비스 이용안내 및 은행이 통지한 공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 1.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 2. 타인의 명의, 신용카드정보, 휴대폰 정보, 계좌 정보 등을 도용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3.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행위
- 4. 은행이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은행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 5. 은행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 6. 은행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7.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은행의 정보를 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8.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9.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10. 은행의 서비스를 해킹하거나 해킹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
- 11. 구매의사 없이 반복적인 결제를 발생시키는 행위
- 12. 접근매체의 대여나 양도·양수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 13.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자신의 모바일기기를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 14.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 1.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 2. 전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 중인 모바일기기 및 USIM 칩 등의 분실, 도난
- 3. 비밀번호, PIN 번호 등의 누설
- 4. 접근매체의 훼손,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 ③ 제2항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9조(사고 •장애시의 처리),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의 내용을 준용한다.
- ④ 은행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지·해지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7조 (은행의 의무)

- ① 은행은 제14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은 서비스 장애 시 이를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 ③ 은행은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철저한 보안으로 고객정보를 성실히 보호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거나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보칙】

제18조 (분쟁처리 및 관할법원)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양 당사자간에 법률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분쟁사항 중 운영기관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기관의 처리기준에 따라 운영기관에서 직접 대응 가능하며, 이 경우 은행과 운영기관은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 (준거법)

본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

부칙 (2019.10.30)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9.10.30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2)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0.12.22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24)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1.3.24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3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1.5.3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30)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1.7.30부터 시행한다.